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 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신설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를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5조(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삭제.

제6조(수업 태도)

-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의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등

-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교원은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 · 특정 학년 · 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 · 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 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은 고시를 참고하여 학교 상황에 맞게 결정한다.)

-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

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제16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제10조에 따른 상담·제11조에 따른 주의·제12조에 따른 훈육·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에 따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고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제20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19조(위원회의 구성)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생위’라 한다.)를 둔다.

- ② 학생위는 교감, 인성부장, 학생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 ③ 학생위는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 ④ 학생위는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인성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의결한다.
- ⑤ 학생위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 ⑥ 학생위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학생 징계)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0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5. 퇴학처분 (고등학교만 규정에 넣고, 초·중학교는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줌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함
4. 제21조에 따른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침

④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징계기준의 적용)

징계의 수위는 단계별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징계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3년간 누적 적용된다. 구체적 적용 기준은 아래표와 같다.

구분	항	내 용	징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예 절	1	언행이 불량하여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	●	●	●		
	2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함 (비아냥, 교사 앞에서 혼자하는 육설과 난폭한 행동, 훈계 훈육에 대한 무시 등)	●	●	●	●	
	3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행동 수정의 노력이 없는 학생	●	●	●	●	
	4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거나 폭력행사(대들거나 육설이나 위협적인 말로 난동을 부리는 등의 행동)				●	●
준 법	1	학교나 교사의 정당한 명령이나 지시를 고의로 위반 또는 반대		●	●	●	
	2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로 훼손 및 파괴		●	●	●	●
	3	사이버상의 저작권 위배, 타인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도용 및 유출	●	●	●		
	4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됨		●			
	5	사법기관에 구속되어 석방		●	●		
	6	형법상 유죄로 판결		●	●	●	●
	7	외출증이나 조퇴증, 또는 공공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나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		●	●	●	
	8	인화물질 또는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을 소지 및 사용	●	●	●	●	
	9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없이 차량 및 오토바이를 운행한 경우 -면허증을 소지하고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내 출입시	●	●	●	●	
	10	월담(사고예방을 위함)	●	●	●		
약 물	1	음주		●	●	●	●
	2	흡연	●	●	●	●	●
	3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등의 복용		●	●	●	●
용모와 언 행	1	등교시 교복이나 생활복 이외의 옷 착용	10회 이상 지도	20회	30회 이상		
	2	실내화나 쪼리 등을 신고 등교					
	3	지나친 염색 (1주일의 기간을 2회 주고도 따르지 않을 시)					
금 품	1	타인의 금품을 절취 또는 사취			●	●	
	2	상습적으로 타인의 금품과 물품을 빌린 후 반환하지 않음	●	●	●		
퇴행 폐위	1	-외설물을 소지, 탑돌 및 시청, 제작, 게시, 낙서, 회람(사이버상의 음란물 포함)	소지	시청	제작	게시	
	2	학생 출입금지 업소에 출입			●	●	
	3	도박 행위 및 도박에 관한 물품 소지	1회	2회	3회	4회 이상	
	4	교내외에서 이성 또는 동성교제로 물의를 일으킴		●	●	●	
	5	교내에서 지나친 애정행각(포옹 등 지나친 신체 접촉)	●	●	●	●	

집 단	1	불법집회나 불량 써클에 참여		●	●	●	
	2	학교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학생들의 모임을 피하거나 동조			●	●	●
전 기 자 기	1	교육활동 과정(교사시 포함)에서 휴대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	●	●			
수 업	1	교사 지시불이행			●	●	●
	2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	●	●	●	●	
고 부 사 정	1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에 동조	●	●	●	●	
	2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절취			●	●	
	3	시험을 거부하거나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 또는 동조				●	
근 태	1	매달 월말 통계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 3일 이상(미인정조퇴,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합 3회는 미인정결석 1일로 계산) 연속 18일 이상 미인정 결석	●	●	●	●	●
							●
교 침 권 해	1	교직원(배움터지키미 포함)에게 고의로 불손한 언행을 가함			●	●	
	2	교원에게 심각한 교권을 침해함(폭언, 폭행, 명예훼손)			●	●	
기 타	1	학교 내의 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학교 내의 봉사 처벌에 해당한 행위를 함	●				
	2	정당한 사유없이 학교 내의 봉사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치 않음		●			
	3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사회봉사 처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함			●		
	4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봉사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치 않음			●		
	5	특별교육이수 처벌을 받은 후 재학 중 재차 특별교육이수 처벌에 상응한 행위를 함				●	
	6	정당한 사유없이 특별교육 처벌에 대한 징계를 거부 또는 이행치 않음				●	
	7	재학 기간 중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3회 이상 받음					●
	8	출석정지 30일 이상의 처분 이후에도 개선의 정이 없음					●

제24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으며, 다음 1호, 2호, 3호의 징계를 중복 또는 거부할 경우 상위 단계의 징계를 할 수도 있다.

-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성인권부, 진로상담부,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학교에서 상담 및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 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 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6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되어,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 ④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학생의 학교생활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상담 및 회복적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을 돋는다.
- ⑤ 징계처분을 받고 그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가중하여 처벌한다.
- ⑥ 징계처분의 범위가 허용하는 한 단계적 가중 처벌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제29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 · 대통령령 · 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30조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제30조(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교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교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교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교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의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교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교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0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